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원 등록사항에 모집시험을 포함〉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66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3.
3. 회부연월일 : 2025.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과도한 시험 등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4세·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감독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u>교습과정</u> ,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 ----- ----- ----- ---- <u>교습과정(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초등의대반 시험 등 모집시험으로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 모집시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해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하여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더불어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 현재 사교육으로 인한 현황을 보면, 2024년 사교육 참여율이 2020년에 비하여 약 13%p 가량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하여 사교육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하더라도, 2021년 다시 75.5%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추이를 살펴보면, 영어학

원의 학원비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사교육 교육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초·중·고학생 사교육비와 참여율>

(단위: 억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교육비 총액	193,532	234,158	259,538	271,144	291,919
사교육 참여율	67.1	75.5	78.3	78.5	80.0

자료: 통계청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추이>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학원비	1,114,588	1,161,280	1,319,146	1,361,799	1,428,731

자료: 서울시 교육청

특히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준의 일명 ‘레벨테스트’ 시행 등으로 극단적 형태의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권고¹⁾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①영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를 국가 주도로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 ②영유아 대상 극단적 선행학습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마련 ③초등학교 입학 전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 모색 ④유엔

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25진정0268600

「아동의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놀이·탐색 중심의 교육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의견표명²⁾을 하였음.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학교급 및 학습자 모집 시험을 포함하게 되면, 등록 학원의 주요 학습 대상자의 연령 및 일명 레벨테스트인 모집시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제도적 개선책 마련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현행법과의 관계를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³⁾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동법 제 17조⁴⁾는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에 모집시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등록한 후, 모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지도·감독 및 등록말소 또는 교습의 정지, 교습소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폐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현행 등록제도와 모집시험 추가의 정합성 여부와 등록대상에 대한 명확성 제고,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관리 사항 등의 집행적 측면 등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등록제도⁵⁾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허가제도를 도입할 만큼 높은 규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허가와 신고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 제도로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의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신청서에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재사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원을 등록할 수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원의 등록사항의 기준과 관련하여 학원의 교습과정,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충족기준⁶⁾”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모집사항”을 등록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등록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

5)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5

6) 참고자료3

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등록제도의 성격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아울러,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등록사항에 추가하는 경우 단순히 모집시험의 유무만을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구체적인 모집시험의 형식과 관련 절차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과도한 모집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음.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7)에서 학원 등록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학원설립·운영신청서에 대한 서식⁸⁾을 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서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분류⁹⁾된 교습과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사항으로 모집시험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집시험”에 대해서 법률에서 직접 구체화하거나, 시행령 혹은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참고자료1 참조

9) 참고자료2 참조

□ 다음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을 이러한 변경등록 사항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구체적으로 이를 보면, 변경등록의 사항으로 ‘모집시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시에는 모집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모집시험을 학원에도 실시해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반대로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충원률 등의 사정으로 모집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을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교육부는 교습과정에 학교급 및 학습자 모집시험을 포함하게 되면, 학원의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학교급별에 따른 모집시험 여부를 등록하도록 자구 수정을 한다면 무분별한 모집시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 관계기관의 의견으로 모집시험은 학생의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한 절차로서 ‘교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교습과정에 명시하

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대구광역시교육청)이 있으며, 학원 설립·운영자의 자율적 운영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학국학원총연합회)이 있음.

문 의 처
02) 6788-5193

참고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18.>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설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복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2

학원의 교습과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10.>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 정 및 보 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 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 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기타	특수교육 기타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 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 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 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 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 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 자연	인문사회·자 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응 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 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두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 제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참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학원법 관련사항) 일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당 최소 10제곱미터 이상(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열람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채광시설 등: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설은 같은 건물 내로 한다.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

- ②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제9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 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 정및 보 습	보통교과	입 시	660m ² 이 상	
			검정고시	90m ² 이상	
			보습·논술	70m ²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m ²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 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m ² 이 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 는 시설	120m ² 이 상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4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 육활동	70m ²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m ²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 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 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 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 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 과·제빵, 바리스 타, 소믈리에 등), 포 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 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 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 러, 도매,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 습실, 열람실	비고
			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m ²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m ² 이상	
			통역, 번역	70m ² 이상	
	인문사 회· 자연	인문사회· 자연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m ²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m ²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m ² 이상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